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- 25호

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

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(조례안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10일
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1. **자치법규명** :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(대표 발의자 : 추복성 의원)

2. **발의의원 : 추복성 의원, 임만재 의원**

3. **폐지이유**

○ 옥천군의회 의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「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」가 옥천군의회 입법·법률 고문 위촉 등으로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

4. **주요골자**

○ 「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

5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(☎043-730-3932, FAX 733-9225)

※ 의견통지내용

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 · 단체일 경우 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붙임 :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　례　명 :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　　견